직장내 성희롱 개념 및 신고·접수 절차

1 성희롱 개념

※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' 제2조2호」

"직장 내 성희롱"이란 사업주·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

2 성희롱 유형

※ 고용노동부「직장내 성희롱 예방·대응 매뉴얼(2018. 6.)」

구 분	정 의	주요 유형(예시)
육체적	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	• 안마를 해준다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• 업무 과정에서 격려를 한다는 핑계로 머리나 등을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 • 술에 취해서 부축해 준다며 과도하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등
언어적	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상스러운 이야기(성적비하 욕설 등)를 하는 행위 * 외모평가, 성적인 행위묘사 얘기, 성관계 강요 또는 회유 등	• "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은 갈 필요가 없어" • "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?" • "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, 좀 부실하다." • 자신의 성생활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의 성생활을 질문하는 행위 등
시각적	시각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	•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,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것 * 음란한 모형물, 사진 등을 책상에 비치하는 행위 • 야한 사진이나 농담시리즈를 카톡,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 •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것 •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것 • 가슴이나 엉덩이, 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빤히 쳐다보는 것
기 타	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.	•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•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참석을 종용하는 행위 •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, 술자리 참석을 강요 • 이혼할테니 사귀자고 강요하는 행위 등

3 공사 신고·접수절차

※ 새종특별자치시(여성가족과) 성희롱·성폭력 사건처리메뉴얼(2019년) 준용, 작성

1 신고 접수	• 누구든지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담신청, 서면, 전화,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 • 신고접수 : 감사평가팀(044-850-0122~0124)
⇩	
2 상 담	• 상담자 - 公社 : 감사평가팀 감사담당자 - 외부전문가 : 종촌동 사회복지센터 성폭력 상담소장 ☎ 044-850-3095 • 사건의 개요파악, 피해자의 요청사항 청취, 사건처리 절차 등 정보제공 및 설명 • 사건 접수 후,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며 신청인의 신원과 상담내용은 우선적으로 비밀을 보장함
⇩	
3 조사신청 접수, 조사 실시	• 상담 후, 피해자가 사건의 조사를 원하는 경우, 조사 신청 → 고충상담원 조사 접수후 , 조사신청서 작성 • 정식조사 : 감사평가팀 • 피해자 보호조치 즉각 시행 * 유급휴가, 부서재배치, 업무분리 등 행위자와 분리 조치
⇩	
4 고충심의위원회	• 성희롱 성립이 불문명한 경우, 위원회 구성 운영 • 성희롱 성립여부, 행위자 및 피해자 조치 등 심의·의결
⇩	
5 인사위원회	• 행위자에 대한 징계 심의,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실행
⇩	
6 후속조치	•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• 사업주 및 관리자는 2차 피해예방 등 조치

♣ **공사 전 직원은 성희롱 유형별 사례 및 신고·접수 절차를 반복 숙독하여 다른 직원에게 오해를 살 말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바랍니다.**